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주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학이 풍부한 임상경험을 보유한 개원의 등 기존 연구·교육실적 외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연구·교육실적 인정범위 확대 필요

3. 주요내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퍼센트로 인정하여 인정 비율을 상향하고 대상 기관 확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이나 시설에서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그와 관련된 분야의 직무에 종사한 경력은 100퍼센트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①별표 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의 환산율에 의하여 계산한 다. 1. ~ 4. (생 략) <u><신 설></u>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u>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이나 시설에서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 인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 당하거나 그와 관련된 분야의 직무에 종사한 경력은 100퍼 센트</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938